



2019년도 임금 협약서

2019. 12.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

전 문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이하 '진흥재단'이라 한다)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노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본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·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제1장 총 칙

제1조(적용범위) 이 협약은 진흥재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.

제2장 임 금

제2조(임금의 원칙) ① 진흥재단은 제1조에 따른 임금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.

②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제 규정과 방침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.



제3조(임금인상)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,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제4조(2019년도 임금인상) ① 진흥재단은 조합원의 연봉에서 911,640원을 직급에 차등 없이 정액 인상하여 지급한다. 단,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 인상금액에 일부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.

② 임금인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임금은 기본연봉, 성과연봉, 연봉 외 급여로 구분한다.

나. 기본연봉과 연동되는 항목은 성과연봉, 성과인센티브,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한다.

③ 임금총액 대비 성과인센티브 비중은 제반규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④ 수당은 전년수준보다 저하되지 않게 한다.

제5조(기타 복리후생)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되, 가용 재원이 확보된 경우 진흥재단은 이를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에 사용한다.

부 칙

제1조(명칭변경) 이 협약은 진흥재단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.

제2조(유효기간) ① 이 협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1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유지된다.

제3조(협약의 보관)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.

제4조(불이행 책임)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.

제5조(관계법령의 준용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제반 노동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.

2019. 12. 19.

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.

2019. 12. 19.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이 사 장

양 성 광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

위 원 장

이 희 육



12/19
O (인)